

양육관련법령 및 제도개선

1950년대 시작된 국내 양육을 사치성 동물 사육으로 간주한 정부는 관련 정책지원을 외면하고 양육 주산물인 녹용을 약으로 규정하여 상품화를 규제한 반면 외국녹용을 무제한 수입 추천하여 소비시장을 외산이 석권토록 했을뿐 아니라 사육하는 가축에서 생산한 녹용은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농가부업적 양육규모에 소득세등 형평성이 무시된 불공정한 조세정책으로 양육발전을 억제했다.

어디 이뿐인가 세계 각국에서 생산한 녹용의 80%를 수입추천하고 쓸모없는 순록뿔까지 수입을 허락하여 국산녹용소비를 억제하다가 1990년 사슴고기, 1992년 사슴피 수입을 허용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생사슴 수입까지 개방했다. 이와같은 억제정책 때문에 사슴값이 절반이하로 폭락하였으나, 살사람이 없어 수만두(약30%)가 폐축됐으며, 생산물(녹용, 녹혈)은 팔곳이 없어 버려라 하는등 40년간 쌓아놓은 국내양육이 폐허의 위기에 직면했었다. 한편 양육협회는 정부의 각종 규제사항 개선에 노력했으나, 정부당국은 그때마다 사치축종이라는 구실로 외면했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맞선 결과 최근 정부는 양육이 사치성 축종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양육인 건의사항이 부분적으로 수용되었으나, 국제화시대에 대처할 경쟁력 관련 부분은 미흡한 상태이다.

그동안 한국양육협회에서 주도적 노력으로 개선된 양육관련 정책사항은 다음과 같다.

I. 개선실적

1. 순록뿔은 녹용이 아니다.

국내 한약업계는 녹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순록뿔을 대량수입하여 여타 녹용과 함께 보약으로 이용함으로써 국산 녹용판매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1992년 12월 2일 순록뿔은 녹용으로 쓸수 없다는 한국양육협회의 건의에 따라 보건사회부는 동 건의사항을 중앙약사심의회 검토를 거쳐 수용하고 순록뿔은 녹용에서 제외하는 한편 93년부터 수입과 유통을 금지조치했다.

2. 사슴뿔, 피 채취는 동물학대 아니다.

1991년 5월 동물보호법 제정과정에서 녹용 및 녹혈채취가 동물학대행위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기르는 사슴에서 채취한 녹용 및 녹혈은 축산물이며 정당한 생산과정이라는 한국양육협회 의견을 받아 들여 동물보호법 제11조 [적용의 제한] 4항 “약용 또는 공업용 등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물의 뿔, 피등을 취하는 경우” 라는 조항을 두어 사슴뿔과 사슴피 채취를 합법화를 했다.

3. 국내양육보호를 위한 수입사슴 검역강화

1991년 8월 보건사회부의 사슴피 세균감염 발표와 관련하여 국회보사위를 통한 진상을 규명한 바 외국사슴의 세균감염자료를 인용한 오보라는 보건사회부장관과 보건원장 및 발표자(생약규격과장)의 해명사과를 징취했다.

동년 9월 한국양육협회는 92년부터 수입될 사슴의 검역과 관련한 의견에서 수입물량 극소화를 위해 검역은 정부시설검역장에 국한되 1회 검역량은 한비행기 1대의 물량으로 최소화하고 검역기간은 최대한 연장토록한 방안

7월 이를 수용한 수입조건을 개정하여 사슴수 입역제도를 강화했다.

4. 사슴은 오폐물 발생이 없다.

1992년 5월 정부는 가축의 오수,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안을 마련하고 사슴을 대상 축종으로 규정하는데 대해 양록협회는 사슴의 배분은 입자고형체로 1일배설량은 0.5Kg이나, 사슴장 청소시 수거하여 사료포장의 기비로 활용하고 소량의 배뇨수는 사슴장내에 침수되어 흘러내리는 오폐수 발생이 없으므로 사육규모와 관계없이 폐수처리 시설대상이 아니므로 동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양록조합의 현장검증 안내등으로 사실이 확인되어 기타가축(사슴, 염소 등)은 시설대상에서 제외됐다.

5. 녹용은 축산물이다.

기르는 사슴에서 생산한 녹용이 축산물이라 함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다.

사슴은 1976년 축산법에 기타 가축으로 규정했으나 주산물인 녹용은 축산물로 규정하지 않고 약사법령에 약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국산녹용의 건조, 절단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저촉되어 생녹용을 실수요자에 팔아야 하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 한국양록협회는 수년동안 시정을 요구했으나, 문민정부의 경제규제완화정책에 따라 1994년 빨(녹용)은 축산물로 수렴한 축산법 시행령(제3조 2항)을 개정했다.

6. 녹용 건조판매

축산법령이 정한 축산물인 녹용을 1994년 3월 보건사회부는 한약규격화 대상품목으로 고시하고 95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격분한 한국양록협회는 즉각 정책의 모순과 외국양록의 실상을 TV로 방영하는 한편 항의집회를 개최하여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고 청화대를 비롯하여 정부, 국회등에 강력

히 탄원한 결과 6.9. 보건사회부는 양록업소가 녹용을 채취하여 그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행하는 단순, 세척, 건조, 절단작업은 의약품제조행위가 아니라 축산물 가공과정의 일부로 간주하므로 약사법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이 경우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포장효능, 효과 등의 표시기재 및 선전광고는 하여서는 아니됨이라 회신했으며,

6.22 관련 회의 업무지침에서 농산물로 판매시 유의사항으로는 “이와같이 단송가공하여 농산물로서 공판장이나 재래시장 등지에서 판매하거나 한약재로서 한의원, 한약방 등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효능, 효과표시 및 선전광고는 안된다. (약사법)”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산녹용은 생, 건을 막론하고 축산물로 유통이 허용된 것으로 양록사상 최대현안을 수용한 것이다.

7. 불공정과세 시정

같은 자양강장품목인 인삼, 로얄제리는 가공제품에만 과세하나 녹용은 비가공품인 생용에 과세하는 것은 품목간 형평성 잃은 불공정과세이므로 비가공녹용도 비과세해 줄 것을 수여년간 건의했었으나. 재무당국은 사치축종 운운하면서 시정을 외면했었다.

그러나 한국양록협회와 업계대표들은 지난 5월과 9월 대통령을 비롯하여 국회, 정부, 정당 그리고 정보기관등에 불공정과세시정을 탄원한 결과 주무부인 재무부는 12월 15일 여타 자양강장품목간 과세형평을 기하고 9천여 양록농가의 생산활동지원을 위해 1995년 부터 가공하지 아니한 녹용을 비과세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부업규모양록에 대한 비과세 범위는 1996년 소득부터 1.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통보해왔으며, 주무부인 농림수산부(축산경영과)도 이를 뒷받침하는 전화통화가 있었으므로 1968년 이래 적용해온 불공정 세제시정이 관철됐다.

지는 비과세한다는 내용의 세법개정을 통보해 왔으며, 주무부인 농림수산부(축산경영과)도 이를 뒷받침하는 전화통화가 있었으므로 1968년 이래 적용해온 불공정 세제시정이 관철됐다.

8. 양육시설 자금지원

정부는 1994년부터 양육농가의 국제경쟁력 지원의 일환으로 축산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1994년도는 44농장 10억 3천 5백만원이 지원됐으며, 1995년도는 배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희망농가는 다음사항을 참고하여 이용하기 바란다.

3년이상 전업양육자 또는 농과계 졸업자 및 농민후계자로 1년이상 양육한 자로서 사육시설이나 사육용기계, 기구 등의 시설을 하고자 하는 자는 5천만원 이내의 축산시설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자금의 이윤은 년5%이며 3년 더치 7년 상환이고 희망자는 사업계획서(소정양식)를 작성하여 거주지 시장, 군수에 신청하면 시장, 군수는 검토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도지사는 농발심의위원회 축산분과위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본회 회보 제20호 43-45P 참조)

II. 개선해야 할 사항

1. 사슴 및 녹용수입 관세 인상

92년 사슴수입 개시이후 중대형 사슴 수입량은 8,300두이며, 내·외산 구성 비율은 70대 30이다. 이와같이 많은 사슴이 수입됨에 따라 국내 사슴가격은 각 품종마다 절반이하로 폭락했고, 매매마저 두절된지 오래이나 수입이윤이 많은 저급사슴수입은 계속되고 있어 국내 양육보호가 시급하다. 따라서 내·외산 사슴가격차를 관세로 흡수하는 조정관세적용을 실현해서 사슴수입을 억제해야 하며,

국산녹용가격의 3분의 1에 불과한 외국산 녹용의 수입관세를 100% 인상하여 내·외산 녹용가격차를 감소하므로써 국산녹용의 소비

를 확대할 수 있다.

2. 녹용의 수급조절

보건사회부는 4월부터 한약규격화 실시를 고시한바 있다. 이 경우 외산녹용은 전량 규격화하여 한약업소에 공급하고 한약업소는 규격품만 사용하도록 제도화된다.

따라서 국산녹용을 한약재로 이용하도록 하려면 내·외산 녹용수급조절정책이 있어야 하며 아울러 한의약업계와 관계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녹육 및 기타생산물의 상품화

양육부산물인 녹육, 녹혈, 녹피, 녹미, 녹신 등의 상품화를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마련하여 양육부가가치 창출을 추진해야 한다.

4. 양육인 경쟁력 배양

국내 양육은 과거 양육인 간의 우열경쟁에서 지금의 경쟁상대는 뉴질랜드, 소련, 중국, 미국, 캐나다 등으로 전환됐을뿐 아니라 품질과 가격의 경쟁시대이다. 개방 3년만에 사슴 폐축이 30%에 이르고 외산녹용이 국내시장을 석권했다.

이제 우리 양육인이 더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남은 것은 앞으로 돌진하는 반격이 있을뿐이다. 바로 이것이 국제경쟁시대를 맞이한 우리 현실이므로 우리는 국제경쟁을 피할 수도 안 할수도 없게 됐다. 그러나 경쟁에는 경쟁할 수 있는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데 그 요소는 상품의 품질개선과 생산비 절감이다. 따라서 생산자 단체는 상품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기술개발, 소비확대(홍보)를 추진해야 하고 양육인은 품질개선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목장경영을 개선하는 등 국제경쟁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당면 현안추진은 양육인의 현실인식 전환과 책무(양육발전동참) 이행이 선결요체라 사료된다. *